

파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

「하수도법」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, 「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파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5.



1. 공고기간 : 2026. 8. 5. ~ 2026. 8. 25.(20일간)
2. 공고방법 : 파주시 홈페이지 (<http://www.paju.go.kr>)
3.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
 - 「하수도법」 제61조(원인자부담금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, 「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21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
4.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
 - 건축물 등을 신축·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㎥ 이상 증가 되는 경우(개별건축물 등)
5. 대상지역 : 파주시 하수처리구역 내
6. 공고내역
 -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: 2,447,000원/㎥
7. 시행예정일 : 2026. 8. 27.
 -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

8. 의견제출

○ 본 공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, 단체,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 (붙임)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
-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○ 제출기한 : 2026. 8. 25.까지 도착

○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

- 우 편 : 파주시 시민회관길 16-11(명성빌딩 1층 하수도과)(우편번호 10932)
- 팩 스 : 031-940-5099

○ 문의처 :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 (☎031-940-5522)

※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.

PAJU

[붙임]

의견제출서				
의견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	
	주소		전화번호	
제출의견				
PAJU				
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인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6년 월 일 제출자 (서명 또는 인) 파주시장 귀하				